###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26 제출연월일: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으로, "제26조제1항 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 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
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명령 등) ①
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	
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b>.</b>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2조제5항</u> 을 위반하여 신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u>
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	<u> 히</u>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6</u>
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	조제1항 후단
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 6. (생 략)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